

2. 법·제도적 위험요인

가. 의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공투자로 추진되므로 법·제도와 규정에 부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부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인데 사업기획, 사업공고 및 신청, 과제평가 및 선정, 연구협약, 연구비 지급 및 사용,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절차진행¹⁾이 이루어질 경우 법·제도적인 쟁점사항이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수행하려는 연구개발활동 또는 사업 성과물의 활용방안 등에서도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연구개발부문은 도로·철도와 같은 건설사업과 달리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산출물이 국제교역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가 간 교역관계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관된 사건이 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은 혁신과 연계되어 산업전반에 확산된다고 보기 때문에²⁾, 무역과 관련된 국가 간 규제 측면에서 연구개발활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험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결과를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4-1> 자원조달 가능성 평가질의

평가질의(조사취지)	고려사항(사업별 맞춤형 선택)
1. 국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2.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1) 단순한 모의(謀議) 등.

2) 발명(R&D활동)이 혁신에 영향을 주고 혁신의 산출물이 확산된다는 3단계 기술변화 모형으로 설명하는 혁신에 대한 선형모형이 있음.

나. 항목 구성

법·제도적인 위험요인의 항목은 현행 국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국내 연구개발사업과 연관되는 법·제도는 다양하며, 검토 대상으로서의 개별규정체계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더욱 다양하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근거³⁾, 조사대상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⁵⁾ 등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되는 필수검토법령은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술 분야에 따른 관련법과 개발하려는 기술과 산출물의 종류⁶⁾, 산출물의 활용과 확산⁷⁾, 인프라 구축⁸⁾ 등 사업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WTO 보조금협정)’이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 분석의 관점 및 기준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업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근거법령 등이 사업의 추진근거로 삼기에 충분하지 못하거나 타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즉,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업과 연관된 일련의 주체들이 해당 위험요인에 대하여 객관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라. 분석절차 및 방법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은 사업 주관부처가 제시한 추진근거법령 및 하위규정 등의 기초자료 확보, 사업추진과 관련된 규정 탐색 및 확정, 위험의 식별 및 분석의 순서로 진행한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동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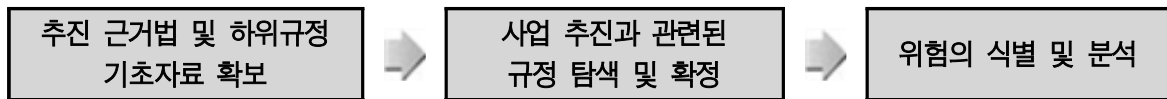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6) 개발할 기술과 산출물이 국방, 전략물자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함.

7)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중, 산출물을 적용하려는 환경, 지식재산권의 행사 방법 등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음.

8)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중, 건물이 건축물의 층수를 규제하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었음.

다. 기초자료는 법률, 행정력 있는 공식문서, 판결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전문가 및 국제통상전문가와 함께 분석한다.



[그림 4-1]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절차

(1)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규정 탐색 및 확정

국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법·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법 이외의 법령⁹⁾과도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별 관계 법령은 상이하고 다양하며, 따라서 검토 대상 법과 제도를 확실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조사대상 사업에 관련된 소관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여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위험의 식별 및 분석

전술하였듯이 위험의 식별 및 분석은 개별사안과 고려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추진체계와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다. 이밖에도 국가계약체제나 무역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주로 고려되는 규정체계와 관련하여 위험의 식별 및 분석을 위한 체계에 대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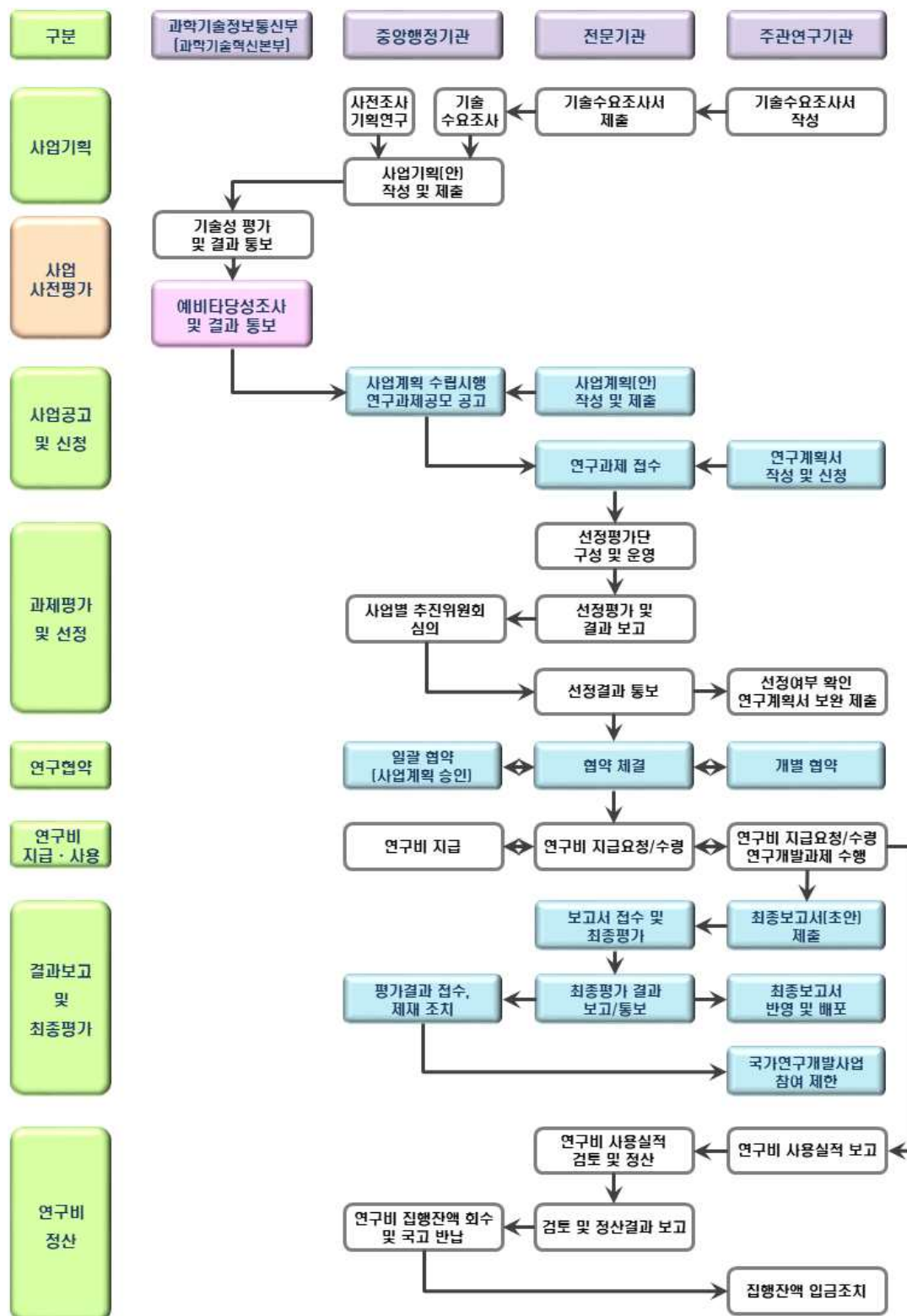
(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검토¹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정의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준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¹¹⁾에 따른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9) 예) 인력고용 및 파견과 관련하여서는 「파견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정부법무공단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내용임.

11) 동 규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림 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a), 미래창조과학부(2013)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a)를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받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사업의 기획, 사업의 공고 및 신청, 과제평가 및 선정, 연구협약, 연구비 지급 및 사용,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의 순서로 구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러한 절차 중 사업의 기획과 사업의 공고 및 신청 사이에 수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기획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이후에 수행된다. 이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단계와 예비타당성조사 전후의 절차는 <표 4-2>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표 4-2>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단계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진행되는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사전기획, 기술성 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사업공고 및 신청, 과제평가 및 선정, 연구협약, 연구비 지급 및 사용,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

(나) WTO 보조금협정 관련 검토

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WTO 보조금협정 제1조1항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정부 또는 공적기관¹²⁾에 의한 ② 재정적 기여로 인해 ③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인정된다.

보조금의 행위 주체로서 ‘정부’의 범주는 중앙정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공적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지분이 50%를 넘는 공기업은 공적기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 소유지분이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받는 기관, 심지어 상당한 정부지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상업적인 기능에 충실한 기관을 공적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그 수준과 정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¹³⁾

보조금의 두 번째 요건인 재정적 기여는 ① 자금 및 채무부담의 직접적 이전, ②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대출보증, 세액공제 등 정부 세입의 포기, ③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정

12)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13) 안덕근(2003).

부에 의한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정부에 의한 재화 구매, ④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위 3가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재정적 기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때문에 보조금의 행위 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⁴⁾

보조금의 세 번째 요소인 '혜택'은 WTO 보조금협정에 정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WTO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패널 및 상소기구는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혜자에게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제공될 때, 혜택이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떠한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명확한 해답은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감안할 때, 시장의 상황을 자국시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위 세계화된 시장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보조금의 사용은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¹⁶⁾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설계하는 경제 주권적 성격을 지닌다. 보조금은 국내기업의 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켜 외국 경쟁기업의 생산¹⁷⁾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 간 전략적 관계의 변화는 나아가 정부로 하여금 교역조건의 변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교역조건을 국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적 무역정책¹⁸⁾을 채택하고 추진할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¹⁹⁾ 이는 보조금이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수출 촉진이나 수입 억제 등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무역 왜곡적 양상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정책적 유인을 부여받는 내쉬균형²⁰⁾이 성립되면 각국의 후생은 오히려 저감하며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²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14) 강문성(2003).

15) 안덕근(2008), op. cit, p.8.

16) 국제무역이론에서의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제적으로 산업구조가 과점(oligopoly)상태인 경우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하여 분석되는 무역정책을 의미함(Brander, 1995).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정책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정의와 국제무역이론의 정의를 병용함.

17) Cournot 경쟁의 경우.

18) Bagwell & Staiger(2002).

19) 교역조건의 변화를 통한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형태는 관세부과임.

20) Nash equilibrium; 내쉬균형은 게임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개념으로 경제주체의 상호 최적반응의 집합(collection of mutual best responses)으로 정의될 수 있음. Mas-Colell et al.(1995) 참조.

21) Brander(1995).

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으로 알려진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WTO 보조금협정 제2조에 따르면 동 협정은 '특정성' 있는 보조금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성이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 또는 특정 지역 안에 위치한 일정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 판단 시 법적 기준과 사실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므로,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법적 기준보다 폭넓은 개념이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①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②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③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 방식 등이 있다.

보조금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타 회원국이 대응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성은 보조금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의 특정성은 WTO 보조금협정의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므로 보조금뿐만 아니라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서도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 수립 시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²²⁾ 현재 보조금은 크게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²³⁾ 한편, 과거 허용보조금으로서 합법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연구개발보조금은 특정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성이 있더라도 교역상대국에게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통상마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분류유형인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그 내용상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불문하고 동 협정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2) 이정희(2006).

23)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 조항은 2000년 1월 1일자로 실효된 상태이며, 이후 도하라운드에서 그 연장 여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까지 도하라운드 진행상황에 근거할 때, 허용보조금 조항 연장을 위한 협상 재개 자체도 불투명함.

<표 4-3> WTO 보조금의 유형(2000년 1월1일 이후)

구분	내용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y)	▶ 그 자체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성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WTO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수입국이 자국법에 의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WTO 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의 운용은 회원국의 경제개발 정도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거의 모든 회원국의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이 예외 없이 금지되고 있음 ▶ 유형 •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 • 수입대체보조금(local content subsidies) :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공여되는 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 i)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 ii) 혜택이 부여되고, iii) 특정성이 있을 경우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러한 재정적 기여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WTO 제소 또는 피해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상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 * i)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ii) 1994년 GATT협정에 의한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iii)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injury)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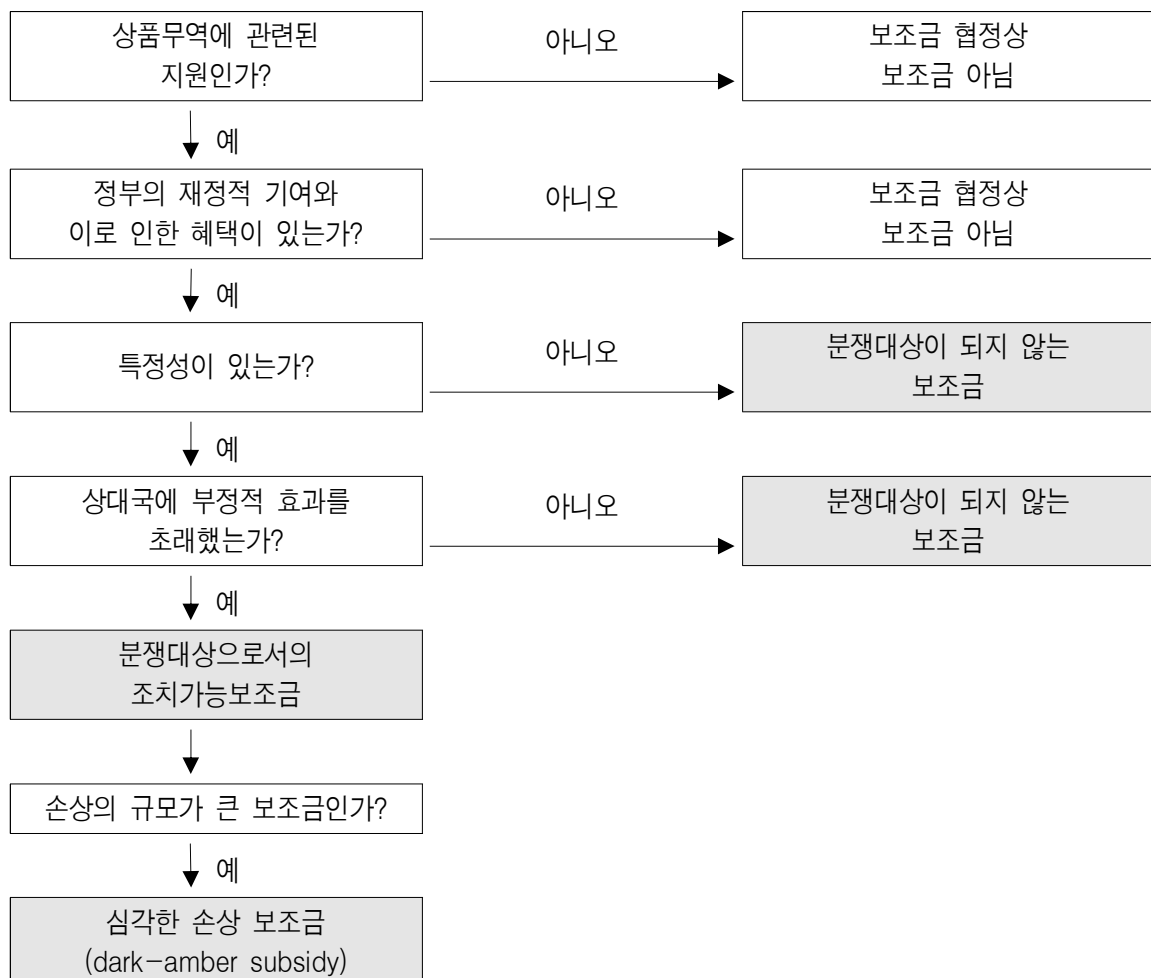
먼저 수출보조금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지원 대상산업의 수출 증진 등을 궁극적인 목표 또는 기대되는 정책 추진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수출성과와 연계한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에 의해 시행된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반드시 기업의 수출실적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사실상 지원내역, 지원의도, 개발성과물의 판매 전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후적인 측면(hindsight)에서 '사실상'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대체보조금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 중에서 사전에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한다는 취지는 크게 부각된 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지원의 자격 요건이나 전제 조건으로 부과되었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이나 전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의 지침이 교역상대국 정부나 이해당사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리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수입 대체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금지보조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성이 인정되고 교역상대국의 산업에 피해를 유발한 경우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되며, 동 협정이 규정하는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의 분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4-3]와 같다.



[그림 4-3]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WTO 보조금협정 제1.1(a)(1)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는 ①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 부담의 직접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②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④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①에서부터 ③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 네 가지이다. 정부지원의 특정성 여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이는 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협정 제2.1조(a)에 따라 보조금 공여당국 또는 당해 공여당국의 법률이 보조금 지원대상을 특정 기업 또는 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통상 문제는 대부분 특정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특정성의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특정기술이나 제한된 상품특성에 연계된 기술지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통상 측면에서 사전에 정부지원 대상을 구체적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산업분야 또는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것은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특정성의 경우, 법률상 특정성이 외견상으로는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금이 실제적으로는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① 제한된 숫자의 특정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② 특정 기업에 의한 지배적인 사용, ③ 특정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고액의 보조금 지급, ④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보조금협정 제2.1조(c)조) 등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특정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타 국가에서 특정 상품이나 기술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특정성 요건에 대해 달리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정부연구개발 지원의 수혜 대상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체제가 왜곡되고 있는지는 사업에 따른 상용화 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일부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투자 자금의 비중이 과다한 경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결과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나 하는 것과 직결된 것으로서, 정책 추진의 결과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조금협정에서는 특정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역왜곡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형태의 보조금은 보조금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관련 법률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이 이러한 시장친화적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허용받고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규정된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근본적으로 보조금정책의 시행취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지원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일종의 물리적인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다. 분석결과의 활용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발생확률과 영향의 크기에 따라 위험한 정도를 유형화한다. 이를 위해 확률-영향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중립, 일부 위험, 위험으로 범주화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